

1. 住宅分讓價原價連動制施行指針中 改正指針

建設部住政 第58500-1669號, 93. 9. 11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택사업자가 착공보증수수료 또는 분양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비에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택사업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보유택지는 주택사업자가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이전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암석지반 또는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 방음시설 또는 차수벽 설치비용

신규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3조(건축비 상한가격) ①~②생략 ③신설	제3조(건축비 상한가격) ①~②현행과 같음 ③주택사업자가 착공보증수수료 또는 분양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비에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안)
<p>제5조(사업자보유택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p> <p>①주택사업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생략</p>	<p>제5조(사업자보유택지의 감정평가)</p> <p>①주택사업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업자보유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및 방법)</p> <p>()사업자보유택지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이전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각종건축규제를 받아 사업승인신청중이거나 착공연기조건부로 사업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규제가 해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p>	<p>제6조(사업자보유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및 방법)</p> <p>①사업자보유택지는 주택사업자가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이전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p>
<p>제7조(사업자보유택지의 택지비가산항목)</p> <p>①~②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3. 생략</p> <p>4. 연약지반의 보강공사비</p>	<p>제7조(사업자보유택지의 택지비가산항목)</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암석지반 또는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 방음시설 또는 차수벽 설치비용</p>

현행	개정 (안)
5.~6. 생략	<p>5.~6.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지침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2.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p>